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신원식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방전직교육원이 전직지원교육대상자에 대한 군내교육을 국방부로부터 '위탁'받아 수행하고 있으나, 동 조문 6항은 '대행수행'으로만 국한된 표현이므로, '위탁교육'을 병행명시 필요

3. 주요내용

현재 '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'를 '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킬 수 있다'로 병행명시 변경

4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국방전직교육원법」 제6조(사업)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제6호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

- (2) 정부입법지원센터 - 법령입안 심사기준

(가) 대 행 : 정의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으로 하고,
책임도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

(나) 위탁 : 원 권한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
그 권한을 맡기는 것을 말하며, 위탁자가 비용부담과
최종적인 책임을 짐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의2(전직지원교육 대상 등)

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,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킬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의 2(전직지원교육 대상 등) ① ~ ⑤ 생략 ⑥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,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<u>대행</u>시킬 수 있다. ⑦ 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<u>대행</u>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.	제60조의 2(전직지원교육 대상 등) ① ~ ⑤ 생략 ⑥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,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<u>대행 또는 위탁</u>시킬 수 있다. ⑦ 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<u>대행 또는 위탁</u>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6632